

[별표 5]

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(제9조 관련)

구 분	대장	인력 배치기준			
운영 지원팀	1	6			
직할 구조대		30			
항공구조구급대 (18명) *1대기준	대장	조종사		정비사	항공구조구급대원
		기장	부기장		
	1	3	3	4 (3교대*1명, 일근1)	7 (3교대*2명, 일근1)

<비 고>

- 가.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(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.) 지역특성에 따라 기능·명칭이 상이한 복수의 형태로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.
- 나. 운영지원팀은 행정·예산·장비관리·복무·교육훈련 등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- 다.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차, 생화학차, 무인파괴방수탐차, 수난버스, 지휘차, 유조차, 중장비차량(굴삭기 등), 인명구조견 및 구조견 차량 등을 운용한다.
- 라. 항공구조구급대는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.
- 마. 직할구조대만 운영 중인 시·도는 운영지원팀 인력을 반영하지 않는다.